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sup>1)</sup>

## Elderl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 Population Aging

### 1. 머리말

우리나라가 20세기 말에 압축적인 경제발전을 경험했다면, 21세기 초에는 압축적인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세계 초유의 급속한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정서적 핵가족화, 양성평등적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와 같이 노인을 사회의 비노인 구성원과 구분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고령화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鄭京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팀장

1) 이 글은 저자의 관련 논문들과 저자를 비롯한 국무조정실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의 실무연구진이 작업하여 작성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하고 고령화사회에서도 우리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정책 마련 또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의 추진경과를 정리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현황과 평가

### 1) 추진성과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81년에 노인복지정책의 법적 기반이 될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노인복지의 확대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추진되었다. 더불어 1981년에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라고 하는 행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2003년 현재 가정복지심의관실 하에 노인복지정책과와 노인보건과의 2개의 과로 확대되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1982년에는 노인복지예산이 전체 정부예산의 0.01%에 불과하였지만 2003년 현재는 0.37%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노인의 해인 1999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만의 정책계획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01년말 국무조정실 산하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해왔다.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져 실제로 현세대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1991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노령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1998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초점이 두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경로연금제도로 발전되었으며, 도입 이후 지급액 및 대상자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취업알선센터를,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인재은행을, 서울시에서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고령자의 소득기회 제공을 위해 1986년부터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과 더불어 1991년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고령자 기준고용률(3%) 제시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고령자 고용촉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생활안정기반 조성관련 정책과 더불어 1987년부터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실시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재가 및 시설보호체계를 구축한 바 있고, 2000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예방적 측면에서 1983년부터 생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 노인건강진단체도를 실시하여오고 있다.

한편,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여가활동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1989년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는 노인여가시설의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노인복지회관 114개소, 경로당 40,691개소, 노인교실 583개소, 노인휴양소 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98년부터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을 발족한 바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확대 외에도 경로우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1982년 경로현장을 제정하였고, 1997년부터 노인의 날 제정 등을 통하여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왔다. 또한 1990년에 노인승차권제도를 도입하여 1996년부터는 노인교통비로 현금지급하고 있으며, 철도·항공기·국공립미술관 이용료 할인 등 경로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2) 평가

그동안 노인복지법의 제정이나 행정체계의 정립을 통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개발·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라는 독립된 서비스 분야가 성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



표 1.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성과
<b>법적 기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법 제정(1981) → 4차례(1989, 1993, 1997, 1999)에 걸친 개정</li> <li>-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1)</li> </ul>
<b>행정적 기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계 신설(1981) → 노인복지과 신설(1990) → 노인보건과 신설(1999) → 현재 2개과(노인복지정책과와 노인보건과)</li> <li>-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구성(2001~2002)</li> </ul>
<b>재정적 토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예산의 규모 확대: 정부예산 대비 0.01%(1982)→ 0.37%(2003)</li> </ul>
<b>서비스</b>	
- 생활안정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1991) → 경로연금제도 실시(1998)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2000)</li> <li>- 노인취업알선센터(보건복지부, 70개소), 고령자 인재은행(노동부, 36개소), 고령자취업알선센터(서울시, 13개소)</li> <li>- 노인공동작업장(대한노인회 등 545개소)</li> </ul>
- 건강보장 및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노인건강진단제도 실시(1983년부터)</li> <li>- 재가노인복지사업 시범실시(1987) 및 주간 단기보호사업 실시(1991)</li> </ul>
- 노인여가활동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1989, 현재 40,691개소) 및 노인복지회관(1989, 현재 114개소) 설치</li> <li>-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발족(1998)</li> </ul>
- 경로우대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제도 도입(1980) → 확대실시(65세 이상, 1982)</li> <li>- 노인승차권 지급제도(1990) →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 1996)</li> <li>- 경로현장 제정(1982)</li> <li>- 노인의 날 제정(1997)</li> </ul>

응하기에는 노인보건복지 행정조직이 미비하며, 법체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별 노인복지정책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경로연금의 불분명한 성격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하여 공적인 소득보장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월 3만 5천원~5만원 수준인 경로연금이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 고용촉진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로 효율적인 고용촉진수단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즉, 고령자 기준고용률(30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3%)은 실제 사업장에서 이미 기준고용률을 넘어서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고령자의 적합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수가 적고 단순노무직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노인 취업알선 지원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의 제정이나 행정체계의 정립을 통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개발·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라는 독립된 서비스 분야가 성립될 수 있었다.

한편, 건강보장과 관련해서는 시설보호나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제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노인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노인교육기관 및 여가활동시설이 부족하며, 노인의 여가 활동이 저조하고 공연관람 등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참여가 낮은 실정이며, 세대가 함께 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참여율이 낮고 직업, 전문적 경력과 연계된 노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봉사처 개발이 미흡하다. 즉,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초석은 깔려있지만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 3. 정책방향

#### 1) 기본방향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및 정보·지식 습득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등 노인인구의 질적인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변화와 더불어 출산력의 저하,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공적 서비스욕구의 증대 등 가족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급감 및 서비스 산업 증가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의 증대라고 하는 거시적 변화의 와중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의 결과를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요구된다.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청년기, 은퇴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연령분리적인 사회에서 교육, 노동, 여가가 전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

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화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노인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즉, 예방적 서비스 체계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후 치료중심·문제해결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이 잔여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대한 기초생활·의료·주거·교육보장 등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공적제도를 내실화하고, 중산층 이상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실버산업의 활성화 추진과 같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2) 개별정책

### (1)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마련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범정부적으로 고령사회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보건복지 관련 업무의 증대와 보건·복지의 원활한 협조와 연계를 위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체계 강화와 지역단위 보건·복지서비스 조직간 협력 및 연계 체계화를 통하여 공공·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사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의 결과를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표 2. 고령사회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과제명	주요 내용
1. 노인보건복지 행정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사회에 대비한 행정조직 기능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li> <li>-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체계 강화</li> <li>- 지역단위 보건복지 조직간 협력 및 연계 체계화</li> </ul>
2.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li> </ul>
3.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센서스에 노인실태 관련 항목 확충</li> <li>• 부처간 통계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li> <li>• 통계자료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구축</li> <li>•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및 선진제도 분석 체계 구축</li> </ul> </li> </ul>

자료: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7월에 발표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 대책』중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노인정책(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교육·문화 등)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중장기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노인 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인구(시설·인력·예산 등), 정부·지자체·민간부문의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실버산업 규모·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책 수립·추진·평가 및 환류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2) 개별 노인보건복지정책 방안

첫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노인들의 사적 부양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기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적 연금 등 사적 보장의 활성화를 통한 보충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에서는 정부가 운용하되 강제적용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1층, 강제적용하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소득비례연금 성격의 2층, 임의 적용하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추가적인 소득비례연금 성격의 3층을 통한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둘째, 건강한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일차산업의 비중이 급감하고 공적소득보장체계가 정립됨에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할 것이므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취업장려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상 차별 금지, 직업개발·직업훈련, 취업지원강화 및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취업촉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노년기의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별 장기요양보호대책을 비교해보면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사회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가족을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자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의식은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우리의 경우 서비스 기반 마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족을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노년기에 진입한 미래의 노인층을 위한 문화여가시장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고학력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기개발욕구가 증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여가서비스는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민간자원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여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주거시설 및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노인복지용품의 생산 유통,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 등 실버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별 개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노인들의 사적 부양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기초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적 연금 등 사적 보장의  
활성화를 통한 보충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부담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표 3. 고령사회에 적합한 개별 정책의 수행방안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노인소득 보장	1. 소득지원제도개선	- 국민연금제도 확충 - 경로연금제도의 내실화
	2. 노인취업 촉진정책의 실효성 제고	- 노인고용기회 확대 ·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금지 · 고용촉진 수단의 실효성 제고 · 고령자 기준 고용률 개선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유도 · 노인창업지원 ·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마련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활성화 ·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확충 - 노인 직업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 고령자 적합직종관련 제도개선 및 직업훈련 특화 · 노인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화 - 노인취업 지원 · 노인인력뱅크 설립·운영 · 고령자 취업 전담인력 확보
노인건강 보장	1. 장기요양 및 재가 복지서비스 확충	-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확대 -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 정부, 가정, 지역사회, 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 ·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노인의료 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 노인의학전문의/노인전문간호사 신설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전문 인력의 제도화 · 일상생활동작 훈련을 위한 재활전문인력 확대
	2. 건강검진의 확대 및 통합검진 체계구축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 건강검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3.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 치매관리 및 지역의료 협력체계 구축 · 시·도별 치매전문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 지원 ·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정기적인 무료 치매 검진 실시 ·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를 노인보건센터로 전환·운영 · 질병의심노인에 대해 보건소에서 건강 및 영양교육실시
	4. 장기 요양비용의 부담 경감	- 장기요양비용의 부담 경감방안 검토
	5. 노인 장기요양의 사회적 공동분담방안 도입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검토

표 3. 계속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노인 교육·문화 활성화	1.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교육기관의 관리운영 체계의 구축</li> <li>- 노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li> <li>- 노인교육 전문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교육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li> <li>•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li> </ul> </li> <li>-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내실화</li> <li>- 정규교육기관 개방을 통한 노인교육기회 확대</li> <li>- 노인교육기관 프로그램 및 인력에 대한 전국 D/B 구축</li> </ul>
	2.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향유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문화 향유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공연관람료 할인 확대 등</li> </ul> </li> <li>- 노인 생활체육의 활성화</li> <li>-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관광복지 프로그램 지원</li> <li>- 경로당·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li> <li>- 노인클럽 활성화</li> </ul>
	3. 노인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기회 확대</li> <li>-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li> </ul>
	4. 세대간 이해증진 노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이해 교육강화</li> <li>-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 확산</li> <li>- 대중매체를 통한 공유기회 확대 및 노인 체험관 설립</li> </ul>

자료: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7월에 발표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의 향후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재정리한 것임.

#### 4. 맺는 말

보건복지서비스 기반과 각종 사회보험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적인 부양부담을 수반하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의 변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이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제로 지속적인 홍보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인관련 단체와 학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반면, 서비스 제공의 기본방향 재조정과 더불어 서비스 기반의 확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의 변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이다.

라고 하는 과제는 예산증대를 전제로 하며, 예산증대의 속도에 따라 기반마련에 소요될 기간이 결정될 것이다. 원활한 예산확충과 예산의 배분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련예산 확보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고령화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정책입안 수행자들의 예산증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과 서비스는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부처적인 대응과 연계를 요구하므로 각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인구고령화는 전 구성원의 사회발전의 참여와 결과의 공유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